

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6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. 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기구 및 직제의 개편으로 당연직 위원의 직명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부위원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위원을 복지환경국장, 문화진흥국장으로
- 서기를 업무담당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함

3. 의안전문 : 별 첨

4. 신구조문대비표 : 별 첨

5. 관계법령 발췌 : 별 첨

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공업경제국장”을 “경제통상국장”으로 하고, 동조 제3항제1호중 “보건환경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, “문화관광국장”을 “문화진흥국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중 “유통지원계장”을 “업무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<u>공업경제국장</u>이 된다</p> <p>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 1. <u>보건환경국장</u>, 농정국장, <u>문화관광국장</u>, <u>건설교통국장</u>으로 임명된 자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6조(간사등) ① (생략)</p> <p>②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<u>유통지원계장</u>이 된다</p>	<p>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<u>경제통상국장</u>이 된다</p> <p>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 1. <u>복지환경국장</u>, 농정국장, <u>문화진흥국장</u>, <u>건설교통국장</u>으로 임명된 자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간사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<u>업무담당사무관</u>이 된다</p>

관련법규발췌

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

충청북도행정조직에관한조례 (조례 제2407호 '98. 9.11)

제5조(실·국·본부의 설치) 충청북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, 자치행정국, 경제통상국, 복지환경국, 농정국, 문화진흥국, 건설교통국, 소방본부를 둔다.